##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71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1.

발 의 자:조경태・이양수・홍문표

서병수・김승수・강대식

최춘식 • 전봉민 • 윤재갑

金炳旭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,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실시 및 생략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영유아보육법」과 같이 유치원 원장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실시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,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 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(안 제17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한다"를 "하며, 유아의 건강검진 실시여부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건강검진 및 급식) ① 원	제17조(건강검진 및 급식) ①
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	
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, 그	
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	
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	
조치를 하여야 <u>한다</u> . <u>&lt;단서 신</u>	<u>하며, 유아의 건</u>
<u>설&gt;</u>	강검진 실시여부를 제14조에 따
	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
	<u>하여야 한다</u> . <u>다만, 보호자가 별</u>
	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
	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
	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
	<u>수 있다.</u>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